

1. 개정 이유

항공종사자 등의 항공기 내에서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61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전문의사 지정요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재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관제사 집단 공백 발생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항공 관제업무한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종사 한정심사 면제제도 합리화(안 제89조)

외국에서 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간 외국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하는 것으로 형식한정시험을 대체하였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항공기 제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한 새로운 형식 항공기에 대한 한정심사 시 국내 정부에서 인정한 전문 교육기관(제작사 훈련기관 포함)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학과 및 실기시험을 면제토록 보완하고자 함

나. 항공전문의사 지정요건 변경 시 재지정 절차 마련(안 제105조)

항공전문의사는 자격, 시설요건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미 충족 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지정 취소 이후 신규로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지정서를 변경 발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다. 그간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우리나라 운송사업자가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당국간 감독의무 이전 협정서 사본을 항공기에 필수로 신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국가마다 협정서의 내용, 양식 등이 달라 ICAO가 표준화된 협정 요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협정서 대신 요약서사본을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하여 이를 국내법규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113조)

라. 운항관리사 근무시간 등 피로관리 기준 마련(안 제128조의2)

그간 승무원(운항, 객실)만 하던 피로관리를 운항관리사까지 확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운항관리사 피로관리를 위한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부령에서 정하고자 함

마. 그간 태평양 등 대양지역에서는 비행경로 감시의 어려움이 있어 항공기간 분리치를 넓게 유지하였으나, 최근 위성 등 항공기 항법장비 발달로 항공기에 특정 감시성능을 갖춘 장비를 장착토록하고, 해당공역의 분리치를 기존보다 축소하여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정 감시성능을 갖춘 항공기에 대해 이 공역을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기 항법장비 등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7조)

바. 그간 국제기준과 다르게 인적요소(Human Factor)만을 교육하던 객실 승무원 교육에 대해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인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을 교육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국제기준(부속서 6)에서 정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18조)

사.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관제사 집단 공백 발생 등 해당 관제기관의 우발상황 발생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우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 관제기관의 관제사가 항공관제업무한정 없이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5조)

아.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이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드론테러 대비 강화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항만시설 등 국가중요 시설물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0조)

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제도 확대(안 제321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자가 시험 당일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응시수수료 반환제도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응시 당일 취소 시 수수료를 환불해 줄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제89조제2항 단서 중 “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국내외 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로 한다.

제10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항공전문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명칭 및 의료기관의 주소 변경 등으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 신청서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13조제12호 중 “이전협정서”를 “이전협정서요약서”로 한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연속 10시간 이하일 것
 2. 연속되는 7일 동안 연속되는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3.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에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 제131조제2호마목 중 “항공안전”을 “항공안전문제의 해소 등 항공안전”으로, “경감 등 항공안전문제의 해소”를 “경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 간의 주요 안전정보 공유·소통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국제민간항공기구, 외국의 항공당국 등과의 주요 안전정보 공유·소통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13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및”으로 한다.

5. 자체 안전보고 운영 및 보고장려에 관한 사항

제217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정한 감시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특정감시성능요구(RSP)공역”이라 한다)

제218조제6항제6호 중 “인적요소(Human Factor)”를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으로 한다.

제22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5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을 받은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경우

2. 제238조에 따른 우발계획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하는 경우 제253조제1항 중 “법 제85조제7항”을 “법 제8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5조제8항”을 “법 제85조제9항”으로 한다.

제308조제9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1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항만 등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호, 제30호, 제31호”를 “제16호, 제18호, 제1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시험시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4.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직계가족의 사망, 갑작스런 사고·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별표10 제2호 가목 17)부터 33)을 각각 19)부터 35)로 하고, 17)과 1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9)(중전의 17))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흡연을 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5호의2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8)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흡연을 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5호의2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19)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6호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1차 위반: 효력 정지 15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75일
나)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별표 10 제2호가목에 20)(중전의 18))다) 중 “항공기준사고, 항공기고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의”를 “항공기준사고 및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사실”로 한다.

별표 20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를 “정책 및 달성목표”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별표 20 제2호가목1) 중 “사업·교육 또는 운항에”를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보안·보건·재무 등)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체 안전보고의 운영 및 보고 장려에 관한 사항

가. 최고경영관리자는 제1호가목2)다)의 일환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집하기 위한 안전보고를 운영할 것.

나. 최고경영관리자는 소속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목격하거나 인지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안전문제를 가목에 따른 안전보고를 통해 적절히 보고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마련 또는 실시할 것.

다. 최고경영관리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제3의 기관·단체·법인 등에 하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속된 종사자가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안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별표 26 제6호가목 4)의 제31호 중 ”막대“를 ”유도봉을 이용하여“로 한다.

별표 34 제2호 더목 중 “승무원의”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로 하며, 별표 34 제2호고목2) 중 “가목”을 “1)”로 하고, 같은 호 고목3) 중 “가목 및 나목”을 “1) 및 2)”로 하며, 같은 호 소목2) 중 “가목”을 “1)”로 하고, 같은 호 소목3) 중 “가목 및 나목”을 “1) 및 2)”로 하며, 같은 호 조목2) 중 “가목”을 “1)”로 하고, 같은 호 조목3) 중 “가목 및 나목”을 “1) 및 2)”로 하며, 같은 호 누목2) 중 “가목”을 “1)”로 하고, 같은 호 누목3) 중 “가

목 및 나목”을 “1) 및 2)”로 한다.

별표 35 제4호 가목 10)을 삭제한다.

별표 37 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관리			
가. 감항성 개선지시, 기술회보 등의 검토 수행절차	○	○	

별표 37 제8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계약정비			
나. 계약정비에 대한 평가, 계약 후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	○	○	○

별표 37 제9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장비 및 공구 관리			
가. 정밀측정 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절차	○	○	

별표 46 제1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면접인력”을 “같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면접인력”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출제인력 : 평가인력 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2명 이상. 이 경우 1명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6등급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인력기준 중 면접·평가·출제인력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응시자 주의사항의 제5호 중 “무선통신 분야는 「항공안전법」 제45조제1항제3호”를 “응시분야(조종, 관제, 무선통신)는 「항공안전법」 제4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1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제1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전문지사 지정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항공전문지사 지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자는 해당 시스템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4조(정비규정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비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규정을 인가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까지 정비규정을 별표 37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05조 제1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은 동력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제5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앞 쪽)

I.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II. 자격명 (TITLE OF LICENCE)	사진 (2.5×3cm)
III. 자격번호 (SERIAL NO. OF THE LICENCE)	
IV. 소지자 성명 (NAME)	
IVa. 생년월일 (DATE OF BIRTH)	
V. 주소 (ADDRESS)	
VI. 국적 (NATIONALITY)	
X. 교부일 (DATE OF ISSUE)	
IX. 「항공안전법」 제38조제4항·제1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THIS LICENCE HOLDER HAS BEEN FOUND TO BE PROPERLY QUALIFIED TO EXERCISE THE PRIVILEGES OF THE LIC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4 AND 112-4 OF THE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87-1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CT.	
VIII. 국토교통부	
※ 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발급함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CHAIRMAN OF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XI. 직인

(뒤 쪽)

XII. 한정사항 (RATINGS)	
XIII. 특기사항 (REMARKS)	
- 항공영어구술능력등급 (유효기간):	
- ENGLISH PROFICIENCY : LEVEL	VALID DATE
- 제한사항 (LIMITATIONS):	
VII. 소지자 서명 (SIGNATURE OF HOLDER):	

54mm×86mm(PVC 카드 또는 전자문서)

항공전문의사 [] 신규지정 지정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지정번호 <small>※ 지정변경 신청자만 작성</small>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의사면허증	발행기관명 및 번호	발행일자	
소속병원 /의원	병원/의원명	소유자명	
	주소		
항공의학 교육	기간	교육기관명	소재지
임상/항공 의학경력	기간	병의원명	소재지
그 밖의 필요사항			

「항공안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신규지정 [] 지정변경 [] 을 신청합니다.
 제105조제1항·제7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 지정변경 []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증명 서류 2. 항공의학 분야의 경력증명 서류 3. 별표 13의 항공신체검사의료기관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 소속 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전문의 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수직분리축소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항공기 등록일 (또는 예정일)			
운항 개시 예정일			
운항 예정 항공기	등록부호	형식 및 모델명	

「항공안전법」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제1항 및 제217조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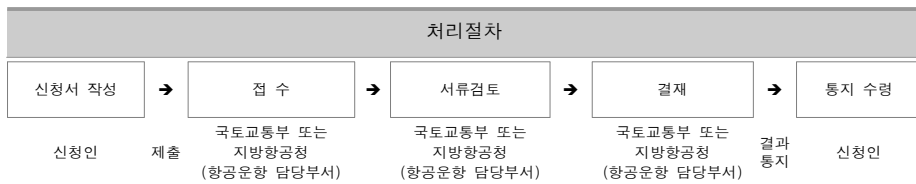
에서의 항공기 운항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운영기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subject to the approved conditions in the Operations Manual)				
발행기관 연락처 (Issuing Authority Contact Details)				
Telephone:		Fax:		E-mail:
운항증명 번호 AOC #	사업자 명칭 Operator Name, Db a Trading Name	발행일자 Date	발행자 서명 Signature	
항공기 형식 Aircraft Model				
운항 형태 Type of operation				
[] Passengers [] Cargo [] Other : _____				
운항 지역 Area of operation				
특별 제한사항 Special Limitations				
승인·허가사항 Specific Approval	Yes	No	세부사항 Description	비고 Remarks
위험물 운송 Dangerous Goods	[]	[]		
저시정 운항 Low Visibility Operations				
Approach and Landing	[]	[]	CAT____, RVR____m, DH:____ft	
Take-off	[]	[]	RVR____m	
Operational Credit(s)	[]	[]		
수직분리축소공역운항 RVSM [] N/A	[]	[]		
회항시간 연장운항 EDTO [] N/A	[]	[]	Threshold Time: _____minutes Maximum Diversion Time: _____minutes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운항 AR Navigation Specifications for PBN Operations	[]	[]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운항 RCP specification for PBC	[]	[]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운항 RSP specification for PBS	[]	[]		
감항성지속유지 Continuing Airworthiness	X	X		
전자비행정보 EFB	X	X		
기타 Others	[]	[]		

<p>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법 제58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라. (생략) 마. <u>항공안전 위험도의 경감 등 항공안전문제의 해소에 관한 사항</u> (생략) 항공안전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견 교환 및 안전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u> 	<p>에 따른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연속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연속 10시간 이하일 것</u> <u>연속되는 7일 동안 연속되는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u> <u>계획된 근무시간 직전에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u> <p>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항공안전문제의 해소 등 항공안전 ----- 경감-----</u> (현행과 같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항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 간의 주요 안전정보 공유·소통 및 안전문화 조성</u>에 관한 	<p>나. <u>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u></p> <p>5.·6. (생략)</p> <p>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4. (생략) <p><신설></p> <p>5. (생략)</p> <p>②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및 구축·운영 그 승인기준은 별표 20과 같다.</p> <p>제217조(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공역)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을 말한다.</p>	<p>사항</p> <p>나. <u>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국제민간항공기구, 외국의 항공당국 등과의 주요 안전정보 공유·소통 및 안전문화 조성</u>에 관한 사항</p> <p>5.·6. (현행과 같음)</p> <p>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4. (현행과 같음) <u>자체 안전보고 운영 및 보고 장려에 관한 사항</u>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p>제217조(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공역) -----</p>
--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5조 제8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조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생략)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 ⑧ (생략)

⑨ 제7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비행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 법 제85조 제9항-----

-----.

③ (현행과 같음)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

-----.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항만 등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

4. ~ 9. (생략)

② ~ ⑤ (생략)

제321조(수수료)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과오납 금액을 반환하고, 별표 47 제15호, 제18호, 제30호, 제31호 및 제34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2. 학과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실기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그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1조(수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시험시행기관-----
2. ----- 5일 -----

<신 설>

<신 설>

3.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4.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직계가족의 사망, 갑작스런 사
고·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